

2018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8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경 찰 청 장

I. 채용 분야 및 인원 (15개 분야 총 504명 선발)

분야	변호사	공인 회계사	테러 수사	정보 조사연구	교통	과학 수사	안전 사고	의료 사고	의료 비리	콘텐츠 기획제작	사이버 수사	사이버 보안수사	경찰 행정학	법학	세무회계
계급(인원)	경감(20)	경위(5)	경장(5)	경장(2)	순경(40)	순경(20)	순경(20)	순경(10)	순경(5)	순경(4)	경장(117)	경장(18)	순경(150)	순경(60)	순경(28)

채용분야	세부분야	계급(인원)	지방청별 채용예정인원(명)															비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경북	충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변호사	경감(20)		본청 20															본청 선발 (131명)		
공인회계사	경위(5)		2	1		1				1										
테러수사	경장(5)		1			1	1	1		1										
정보조사연구	경장(2)		2																	
교통	순경(40)		8	4	2	2	1	1	1	8	3	1	1	1	1	1	3		1	
과학수사	순경(20)		4	2	1	1	1	1		2	2	1		1	1	1	1		1	
안전사고 <순경(20)>	건축·토목	순경(4)		1						1	1			1						
	기계·전기	순경(4)	1		1			1									1			
	화학	순경(4)							1					1	1	1				
	가스	순경(4)			1				1				1			1				
	항공	순경(4)		1		1	1											1		
의료사고	순경(10)		2			1				1	1	1	1		1	1		1		
의료비리	순경(5)								1			1	1	1					1	
콘텐츠 기획제작	순경(4)		2	1						1										
사이버수사 <경장(117)>	사이버수사	경장(87)	18	9	5	4	2	2	2	10	5	3	3	2	5	4	4	7	2	
	디지털포렌식	경장(30)	6	3	1	2	1	1	1	4	2	1	1	1	1	1	1	2	1	
사이버 보안수사 <경장(18)>	해킹	경장(7)							1				1		1	1	1	1	1	
	포렌식	경장(4)			1			1								1	1			
	악성코드	경장(4)		1		1				1		1								
	네트워크	경장(3)						1	1					1						
경찰 행정학과	순경(150)		42	4	4	9	2	3	2	34	15	2	2	8	2	2	7	10	2	
법학	순경(60)		12	6	4	4	1	2	1	12	2	1	1	1	2	1	3	5	2	
세무회계	순경(28)		6	3	1	1	1	1	1	5	1	1		1	1		2	2	1	

※ 현재 주소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지방청에 원서접수

Ⅱ. 시험 절차 및 일정

※ 일정은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험 절차	시험 분야	시험 일정			
		시험 종류	시험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쫌 분야	'18. 7. 20.(금) 09:00 ~ 7. 31.(화) 18:00 <12일간>			



1차시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정보조사연구	서류전형	7. 20.(금) 원서접수 사이트	8. 20.(월)~21.(화)	8. 24.(금) 17:00
	테러수사 교통 과학수사 안전사고 의료사고 의료비리	구술실기시험	8. 2.(목) 원서접수 사이트	8. 6.(월)~14.(화)	
	콘텐츠기획제작	제작실기시험	8. 2.(목) 원서접수 사이트	8. 16.(목)	
	사이버수사 사이버보안수사 법학 세무회계	필기시험 (응시한 지방청 주관)	9. 7.(금) 응시한 지방청 홈페이지	9. 15.(토) 10:00~ (과목당 20분)	9. 19.(수) 17:00
	경찰행정학과		8. 24.(금) 응시한 지방청 홈페이지	9. 1.(토) 10:00~11:40 (100분)	9. 6.(목) 17:00



2차시험	쫌 분야	신체·체력· 적성검사	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9. 10.(월)~10.12.(금)	현장에서 합격여부 판단
------	------	----------------	-----------------	---------------------	-----------------



3차시험	쫌 분야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없음	10. 15.(월)~31.(수)	11. 2.(금) ※ 필기시험 분야는 불합격자 개별통보
------	------	--------------	------	-------------------	--------------------------------------



4차시험	쫌 분야	면접시험	11. 2.(금)	11. 7.(수)~20.(화)	11. 23.(금) 17:00 (최종발표)
------	------	------	-----------	------------------	----------------------------

※ 필기시험 실시하는 분야는 응시한 지방청 홈페이지, 그 외 분야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시험일정 변경, 시험장소, 합격자 명단 발표 등 공지

Ⅲ.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접수 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

접수 기간 : 2018. 7. 20.(금) 09:00 ~ 7. 31.(화) 18:00 <12일간>

- 로그인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마감일 18시 정각까지 결제완료 및 접수번호 확인해야 원서접수 인정**(**마감시간 이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

접수취소 및 응시표 출력기간

채용 분야	접수 취소 기간	응시표 출력 기간
경찰행정학과	8. 8.(수) ~ 8. 28.(화) 24:00까지	8. 8.(수) 00:00부터
사이버(보안)수사, 법학, 세무회계	8. 8.(수) ~ 9. 11.(화) 24:00까지	
기타 쏘 분야	8. 2.(목) ~ 8. 3.(금) 24:00까지	8. 1.(수) 14:00부터

응시수수료

- 경감·경위 7,000원, 경장·순경 5,000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4조)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 저소득층 해당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응시원서 사진

-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 배경 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서류 제출 안내

- 원서접수 시 제출 서류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시험 응시불가

채용 분야	제출 서류	제출 방법	제출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정보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확인 	직접방문 or 등기우편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인재선발계)	8. 10.(금) 18:00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수사 ▶ 교통 ▶ 과학수사 ▶ 안전사고 ▶ 의료사고 ▶ 의료비리 		원서접수사이트 첨부 (사이트 내 원서접수 메뉴 클릭 후 '직무수행계획서' 항목에 업로드 첨부)	7. 31.(화) 18:00限
▶ 위 분야를 제외한 기타분야는 「원서접수 시」 서류 제출 불요			

※ 직접방문이나 등기우편만 가능(퀵서비스 불가)하고,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함

○ 1차 시험 합격자 제출 서류

제출 서류명	양식 및 발급 장소
신원진술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문에 양식 첨부
기본증명서(상세)	인터넷발급(대법원 전자기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 검색),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터넷발급(대법원 전자기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주민센터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인터넷발급(민원24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검색), 주민센터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민원24에서 '병적증명서' 검색), 주민센터, 병무청
개인신용정보서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접속 무료발급) △(주)코리아크레딧뷰로 △(주)나이스신용평가정보
신원확인조회서	가까운 경찰관서(형사팀, 과학수사팀 등)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18. 4. 21(토)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 ※ 약물검사(TBPE)로 발급시일이 소요되므로 1차 합격발표 즉시 준비
응시자격(학위) 서류	해당자격(학위) 발급기관
가산점 자격증	해당자격 발급기관(홈페이지), 자격증 사본

※ 응시자격 서류에 대해 형식상 적격성은 접수시 판단하고, 내용상 적격성은 3차 시험에서 최종 판단

○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모든 증명서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경력증명 (경력증명서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원)	<p>▶ 경력증명을 위해서 ①경력증명서 ②4대 보험 이력확인서 ③소득금액 증명서 세가지 모두 제출해야 함</p> <p>①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과 함께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발급기관의 전화번호·Fax번호·E-mail 주소를 기재하고, 현재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제출</p> <p>②4대 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고용보험</td> <td>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td> </tr> <tr> <td>국민연금</td> <td>가입자 가입증명서</td> </tr> <tr> <td>건강보험</td> <td>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td> </tr> <tr> <td>산재보험</td> <td>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해당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td> </tr> </table> <p>③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인터넷(www.hometax.go.kr)이나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p>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해당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해당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								
외국어 작성 증명서	▶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는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 변호사, 공인회계사, 정보조사연구 분야는 경력증명 관련하여 8. 10.(금) 18시까지 '경력증명서'만 제출하고,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은 신체검사일에 추가 제출

IV. 응시 자격

응시 결격사유 등(붙임 1 참조)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 없어야 함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6조 등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 불가

응시 연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 1의3>

채용분야	채용계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변호사·공인회계사	경감·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7. 1. 1. ~ 1995. 12. 31.
위 분야 외 쏘 분야	경장·순경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7. 1. 1. ~ 1998. 12. 31.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병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8. 11. 6.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 포함

신체 조건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4조의 2/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붙임 2 참조)에 부합
- 「경찰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붙임 3 참조)에 부합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에 따름

면허 및 응시자격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 운전면허 : 도로교통법 제80조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해야 함

※ △ 변호사(경감급) 분야는 운전면허를 응시요건에서 제외함

△ 운전면허는 원서접수일부부터 면접시험 최종일(11. 20.)까지 유효해야 함

○ **자격증 및 경력증명 기준일**

구분	기준일
학위 및 자격증	▶ 신체·적성검사 마지막 날(10. 12.)까지 유효해야 함
어학능력 자격증	▶ 면접시험일 첫날(11. 7.)까지 유효해야 함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11. 20.)

○ 채용분야별 세부 응시요건

채용분야	응시요건
변호사	<p>▶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10. 12. 기준)</p> <p>※ 우대 요건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법조경력 2년 이상인 자</p> <p>※ 법조 경력 :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등 (경찰경력 포함)</p>
공인 회계사	<p>▶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10. 12. 기준)</p> <p>※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감사인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수습(2년 또는 3년) 등을 이수한 자 (실무수습 기간 산정은 11. 20. 기준)</p>
테러 수사	<p><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p> <p>1. 법학·범죄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법학범죄학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p> <p>√ 학위 : 졸업증명서상 학과명에 「법학」, 「범죄학」이 명시된 경우만 인정 전공과 복수전공에 한함</p> <p>2. 범죄분석·테러 관련 학위논문 작성자</p> <p>√ 논문 : 논문 제목에 '범죄 분석', '테러'가 포함된 경우만 인정</p>
정보 조사 연구	<p><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p> <p>1.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p> <p>2.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자</p> <p>√ 공공기관 : 통계청, 한국감정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연금</p> <p>√ 민간기업 : 갤럽, 한국리서치, 리서치&리서치, 현대리서치연구소, 미디어리서치, TNS, 월드리서치, 코리아리서치, GH코리아, embrain, Metrix, NICE알앤씨, PMI, nielsen, Focus, TrendMR, Ipos korea, KSRC</p>

채용분야	응시요건
<p style="text-align: center;">교 통</p>	<p><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교통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교통과목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도시·교통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교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통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3. 도시·교통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교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통 관련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교통 관련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교통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p>√ 학과 : '교통기사 자격증'에 응시 가능한 학과 기준(전공·복수전공에 한함)</p> <p>√ 과목 : 교통/도로 공학,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안전, 교통경제(정책), 교통시설, 교통법규, 교통관리, 교통행정, ITS 등의 분야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교과목명만으로 교통 분야에 해당함을 유추할 수 있거나 그 내용의 대부분이 교통분야에 대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과목을 말함(단, 철도·항만·항공 관련 과목, 포장공학, 물류관련 과목은 제외)</p> <p>√ 학점 :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교통공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45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인정</p> <p>√ 교통 관련 분야 : 교통 관련 분야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교통 관련 분야임</p>
<p style="text-align: center;">과학 수사</p>	<p><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2.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중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자 3.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중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p>√관련 학과</p> <p>과학수사학, 법과학, 법의학(법정의학, 법의간호학, 의학 포함), 범죄수사학, 범죄학, 형사학</p> <p>※ 전공과 복수전공에 한함/학위에 전공명 또는 학위명, 학과명이 관련 분야 해당 시 응시가능 (전공·학위·학과명에 위 열거된 관련 분야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p> <p>√자격증</p> <p>「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자격증 중 화학분석기능사(기사), 위험물기능사(산업기사, 기능장), 생물공학기사, 전기기능사(기사~기능장), 가스기능사(산업기사~기술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산업기사, 기사) / 보건·의료 관련 국가전문자격증 중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사, 약사</p> <p>√관련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 경력: 국가·지자체 소속(산하) 기관, 관련 영리·비영리 민간기관 등에서 관련성있는 직무 분야 근무 · 연구 경력: 국가·지자체 소속(산하) 연구 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외국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성 있는 연구 수행

채용분야	응시요건										
<p style="text-align: center;">안전 사고</p>	<p>▶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자 중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자격증 - 기술사·기능장·기사까지만 인정, 산업기사·기능사는 불인정</p> <table border="1" data-bbox="376 331 1437 734"> <tr> <td data-bbox="376 331 485 443"> 건축·토목 </td> <td data-bbox="485 331 1437 443"> √ 건축 - 건축기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 토목 -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td> </tr> <tr> <td data-bbox="376 443 485 629"> 기계·전기 </td> <td data-bbox="485 443 1437 629"> √ 기계 - 기계안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설비보전기사, 기계기술사, 기계설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산업안전기사 √ 전기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기술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td> </tr> <tr> <td data-bbox="376 629 485 667"> 화학 </td> <td data-bbox="485 629 1437 667"> √ 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사, 화공기술사, 화학분석기사, 위험물기능장, 산업안전기사 </td> </tr> <tr> <td data-bbox="376 667 485 705"> 가스 </td> <td data-bbox="485 667 1437 705"> √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td> </tr> <tr> <td data-bbox="376 705 485 734"> 항공 </td> <td data-bbox="485 705 1437 734"> √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사 </td> </tr> </table> <p>√ 근무경력 : △국가·지자체 소속(산하) 기관 △영리·비영리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 연구경력 : △국가·지자체 소속(산하)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 기관 △외국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한 경력</p>	건축·토목	√ 건축 - 건축기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 토목 -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기계·전기	√ 기계 - 기계안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설비보전기사, 기계기술사, 기계설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산업안전기사 √ 전기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기술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학	√ 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사, 화공기술사, 화학분석기사, 위험물기능장, 산업안전기사	가스	√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항공	√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사
건축·토목	√ 건축 - 건축기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 토목 -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기계·전기	√ 기계 - 기계안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설비보전기사, 기계기술사, 기계설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산업안전기사 √ 전기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기술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학	√ 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사, 화공기술사, 화학분석기사, 위험물기능장, 산업안전기사										
가스	√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항공	√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사										
<p style="text-align: center;">의료 비리 · 의료 사고</p>	<p><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p> <p>1. 의료·의약·보건 관련 자격증 취득자 중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2. 의료·의약·보건 관련 자격증 취득자 중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p> <p>√ 자격증 - (국가전문자격증)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사, 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조산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 (국가기술자격증)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임상심리사 1.2급</p> <p>√ 관련 학과 -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약학, 보건관리학, 임상병리학, 응급구조학, 재활학, 물리치료학, 의료공학, 의무행정학 등 - 전공과 복수전공만 해당</p> <p>√ 관련 경력 : 의료·의약·보건 관련 분야 경력</p>										
<p style="text-align: center;">콘텐츠 기획제작</p>	<p><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p> <p>1. 관련 분야 학사 학위(전공, 복수전공) 이상 보유자 중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p> <p>√ 관련 학과 - 신문방송학, 언론정보학, 홍보학(언론 홍보, 광고 홍보, 마케팅 홍보 등), 영상학(사진 영상, 미디어 영상, 영화영상, 영상편집 등), 광고학(광고 마케팅, 광고 디자인 등), 디자인학(시각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등), 사진학, 미디어학 ※ 전공·학위·학과명에 위 열거된 관련 분야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p> <p>√ 관련 분야 경력 :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경력만 해당</p> <p>√ 근무경력 : △국가·지자체 소속(산하) 기관 △영리·비영리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p> <p>√ 연구경력 : △국가·지자체 소속(산하)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 기관 △외국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한 경력</p>										

채용분야	응시요건
사이버수사	<p><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2.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취득자 중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취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정보처리, 정보보안 √ 관련 분야 :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전자공학 등 전산관련 기술 분야(전기 제외) √ 근무·연구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 업체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직접 담당할 업무가 관련 분야에 해당할 것) √ 관련 학과 :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전자공학 등 전산관련 기술 분야 전공자에 한함(전기 제외), 전공·복수전공에 한함
사이버 보안수사	<p><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전산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2. 전산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취득 후 전산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3. 전산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취득 후 전산 관련 학과 석사 학위 취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 : 정보보안(산업) 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18년 신규 추가) √ 전산 관련 분야 :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전자공학, 수학 등 전산 관련 기술 분야(전기 제외) √ 근무 경력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의 근무 경력(실제 담당할 업무가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전산 관련 학과 :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전자공학, 수학 등 전산 관련 기술 분야 전공자(전기 제외), 전공·복수전공에 한함
경찰 행정 학과	<p>▶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 점 이상 이수한 자</p> <p>※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대학이상 졸업학력 인정자 포함</p>
법학	<p>▶ 법학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보유자(전공·복수전공에 한함) 중 채용분야 관련 과목 35학점 이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학과 : 법학, 법무학, 법률학 ※ 성적증명서상 전공명 또는 학위명에 '법학' 명시(예 : 경찰법학과, 법학전공, 법학사) √ 관련 과목(18) : 물권법, 민법총칙, 상법총칙, 채권총칙, 헌법, 경제법, 형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어음수표법, 보험해상법, 세법, 유가증권법,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형사소송법, 환경법, 회사법 ※ 관련 과목 연습·특강 포함 / 과목 명칭이 일부 다르거나, 총론·각론을 분리하여 수강한 경우에도 관련 과목에 해당되는 경우 학점 인정
세무 회계	<p><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취득자 중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2.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취득자 중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 :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기업회계·전산세무 1 (한국세무사회),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삼일회계법인), AT(FAT·TAT) 1급(한국공인회계사회) √ 관련 학과 : 세무학과, 회계학과, 세무회계학과, 경영회계학과, 금융회계학과, 회계정보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전공·복수전공에 한함, 학과명에 '세무, 회계, 경영, 경제, 금융'이 명시되면 인정) ※ 학과명이 위 기준과 다르더라도 세무·회계 관련 과목을 중심으로 교과목이 편성된 학과의 경우 3차 시험에서 자격 충족여부 최종 심의·결정함 √ 관련 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직접 담당할 업무가 세무·회계 분야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경력 인정)

V. 시험 단계별 평가 방법 등

□ 1차 시험

○ 시험방법

시험유형	채용분야	시험방법
서류전형	변호사	▶ 변호사 서류전형 채점기준(붙임 5-1)에 따라 평가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서류전형 채점기준(붙임 5-2)에 따라 평가
	정보조사연구	▶ 정보조사연구 서류전형 채점기준(붙임 5-3)에 따라 평가
실기시험	테러수사 교통 과학수사 안전사고 의료사고 의료비리	▶ 구술 실기 : 실기시험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첨부 파일)에 따라 평가
	콘텐츠기획제작	▶ 제작 실기 : 실기시험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첨부 파일)에 따라 평가
필기시험 ※ 응시 자명령 주관으로 실시 ★ 세부사항은 아래표 참조	경찰행정학과	▶ 필수과목(5)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10:00~11:40, 100분)
	사이버수사 사이버보안수사	▶ 필수과목(2) :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보안 ▶ 선택과목(1) :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디지털포렌식개론, 데이터베이스론 (10:00~11:00, 60분)
	법학	▶ 필수과목(5)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민법, 헌법 (10:00~11:40, 100분)
	세무회계	▶ 필수과목(4) : 형법, 형사소송법, 세법개론, 회계학 (10:00~11:20, 80분)

	필기시험일	문제 및 가답안 공개	문제 이의제기	확정답안 공개	성적공개
경찰행정학과	9. 1.(토)	9. 1.(토) 12:00	9. 2.(일) 22:00限	9. 4.(화) 18:00	10. 5.(금)~
기타 필기분야	9. 15.(토)	9. 15.(토) 12:00	9. 15.(토) 22:00限	9. 17.(월) 18:00	12. 31.(월)

○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전원 합격자 결정,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실기·필기시험) 지방청별 선발예정인원수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선발 예정인원	6 ~ 49명	5명	4명	3명	2명	1명
실기·필기 합격인원	180%	12명	10명	8명	6명	3명

※ △ 총점의 60% 미만 득점시 불합격 처리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시험유형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신체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평가 ▶신체검사 판정관이 '신체검사 기준표' (붙임 2)와 '신체검사 세부기준(붙임 3)에 따라 사지완전성 사시 문신 등 평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와 '신체검사 기준표' '신체검사세부기준' 모두 합격시 합격 결정
체력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목 : ①100m②1,000m③악력 ④팔굽혀펴기⑤윗몸일으키기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붙임 6)에 따라 평가 ※ 도핑테스트 실시 : 응시생의 5%를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붙임 7)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결정
적성검사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 (총 450문항, 130분)	▶합격·불합격 여부는 판정치 않고, 검사결과를 면접시험시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

□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

- (시험 방법)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합격자 결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요건 적격 여부를 형식·내용상 최종 판단**하여 응시자격 부합시 합격자로 결정

□ 4차 시험(면접시험)

- (시험 방법) 1단계 단체면접 후 2단계 개별면접 실시

단계	평가요소	배점
1단계 단체면접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10점(1점~10점)
2단계 개별면접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10점(1점~10점)
가산점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자격증(붙임 8, 9)	5점(0점~5점)
계	25점	

- (합격자 결정) 단계별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

※ 단,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해 2점 이하로 평가시 불합격 처리

□ 최종 합격자 결정

시험분야	최종 합격자 결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정보조사연구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사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7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위 분야 외 소분야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실기(필기)시험 성적 50%, 체력검사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VI. 임용 등 기타 사항

□ 임용 사항

-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는 신임교육 후 결원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
- **변호사 경채**는 채용분야 필수현장보직이 총 5년으로, 최초 2년은 1급서 경제팀에서 근무하고, 2년 경과 시 1급서 수사팀장 또는 본청·지방청 직접수사부서 등에서 근무하며, 승진 시 본청·지방청 계장급 또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장으로 근무함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타지방청으로 5년간 전보가 제한됨)
- **공인회계사 경채**는 신임교육 수료 후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5년간 의무복무를 하고,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타지방청으로 10년간 전보가 제한됨
- **경찰행정학과 경채**는 임용 후 순번에 따라 2년간 기동대근무(특별 경비부서 포함)를 해야 하고,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타지방청으로 10년간 전보가 제한됨
- 위 분야(변호사·공인회계사·경찰행정학과 경채)를 제외한 소분야는 임용 후 지구대 6개월 근무 및 채용분야 5년간 의무복무를 하고,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타지방청으로 10년간 전보가 제한됨

응시자 참고 및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 가.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특히 접수 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운전면허증·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자격수첩·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 필기시험 분야는 응시한 지방청 홈페이지, 기타 분야는 인터넷 원서 접수사이트에 시험일정 등 관련정보가 게재되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마. 응시자격조건으로 응시하는 자격증, 학위 등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예 : 외사 영어분야 응시자의 토익 가산점 불인정)
- 바.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늦게 도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절대 응시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시간 엄수바랍니다.
- 사. 원서접수 마감은 '18. 7. 31.(화) 18시 정각까지이며 결제완료 후 반드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접수번호 없으면 원서접수 미완료)
- 아. 이 시험계획(일정, 장소 등)은 다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최소 일주일에 1회)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해서 갱신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기시험 유의사항

- 가.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나. 필기시험 OMR 답안지에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표기 해야 하며, 만약 과목순서를 바꾸어 답안을 표기했을 경우 응시표 기재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0)
- 라.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와 모자, 귀마개(이어플러그)를 휴대·착용하여서는 안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통신장비를 지참한 경우 시험실시 전 시험실 앞쪽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자진제출하거나, 추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합니다.
-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 ※ 시험시작 후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때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바.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예고나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 답안지 교체는 시험 종료 전까지 가능하나, 종료시간에 임박하여 교체 요구했을 시 여유시간이 없음과 이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인지해야 합니다.
- 아. 시험 종료 타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즉시 멈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해야 하고, 만약 계속 작성했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

체력검사 유의사항

- 가. 금지약물의 복용이나 금지방법의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고자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 나.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절대로 금지합니다.
- 다. 체력시험 시 부상 방지를 위해 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야 하고, 만약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라. 체력시험 이전이나 체력시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나 부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체력시험 중 바닥 미끄럼에 주의하고, 스파이크 착용은 가능하나 장갑이나 손미끄럼방지 가루(탄산마그네슘가루)는 사용이 금지되며, 기타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바. 체력시험 중 판정관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은 없습니다.

신체검사 유의사항

- 가.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나. 신체검사는 체내 잔류하는 약물검사(TBPE)를 위해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 등에서 4. 21.(토) 이후에 실시하여야 하고,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병원 아닌 의원 不可)
- 다. 응시자 본인이 직접 검사예약한 후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지를 정해진 기일내에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시 신분증 및 응시표, 사진, 검사비용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라. 몸에 부착된 테이핑은 신체검사 전에 제거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마. 색각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유의사항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나.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또는 3명 이하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고, 채용분야 지방청별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다. 채용 계급이 경위 이하인 채용 분야만 해당됩니다.
- 라. 원서접수 시 보훈번호 및 가산점을 입력해야만 인정됩니다.
※ 보훈번호 및 가산점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마. 필기시험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원점수와 조정점수 모두 40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 가점은 단계별 시험마다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아.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1577-0606)

가산점 유의사항

- 가.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가(최고 5점)합니다.
- 나.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 제출한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것만 인정되며, 어학자격증은 면접일 기준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 다.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체력·적성검사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및 임용결격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자신이 응시하는 지방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인재선발계	(02) 3150-2732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서울지방경찰청 교육계	(02) 700-2600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1(내자동)
· 부산지방경찰청 교육계	(051) 899-2332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 대구지방경찰청 교육계	(053) 804-7034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227
· 인천지방경찰청 교육계	(032) 455-2232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
· 광주지방경찰청 교육계	(062) 609-2635	광주시 광산구 용아로 112
· 대전지방경찰청 교육계	(042) 609-243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7
· 울산지방경찰청 교육계	(052) 210-2333	울산시 중구 성안로 112(성안동)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육계	(031) 888-243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교육계	(031) 961-2432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23번길 22-49
· 강원지방경찰청 교육계	(033) 248-043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 충북지방경찰청 교육계	(043) 240-2432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 충남지방경찰청 교육계	(041) 336-2432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 전북지방경찰청 교육계	(063) 280-823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 전남지방경찰청 교육계	(061) 289-2635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59번길 28
· 경북지방경찰청 교육계	(053) 429-223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 경남지방경찰청 교육계	(055) 233-233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
· 제주지방경찰청 교육계	(064) 798-3431	제주시 문연로 18

[붙임 1] 경찰공무원 응시결격사유 등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形)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붙임 2]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色神)	색신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단, 국·공립·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이 인정된다.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 (斜視)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붙임 3] 경찰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평가 항목	내 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사지의 완전성	- 팔다리와 손·발가락의 완전성	-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척추만곡증 (허리휘는 증상)	-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내반슬 (오다리)	- 차렷 자세에서 양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벌어지는 사람 중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상지관절의 정상 여부	-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시 자연스럽게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하지관절의 정상여부	-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안정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붙임 4]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4항 2호(별표1의2)**

인 정 과 목
체포술(무도·사격 포함),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범죄학, 경찰학, 비교경찰론, 한국경찰사, 경찰윤리, 경찰경무론, 경찰생활안전론, 경찰수사론, 경찰경비론, 경찰교통론, 경찰정보론, 경찰보안론, 경찰외사론, 범죄심리학, 피해자학, 과학수사론, 법의학, 형사정책론, 경찰연구 방법론, 테러정책론, 민간경비론, 경찰기획(정책)론, 소년범죄론, 자치경찰론, 국가정보학, 사회병리학, 범죄통계학, 범죄예방론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과목

☐ **유사과목 인정기준**

- 전국 4년제 경찰행정 관련학과의 교과과정 중 전공·기초과목 모두 인정(전공·기초필수, 전공·기초선택)

- 편입생의 경우 前籍대학 이수 전공과목 중 동임용령 별표1의2에 규정된 과목에 한해 인정

[붙임 5-1] 변호사 서류전형 채점기준

전형요소	채점기준	배점
직무경력	▶ 기본점수(경력 24개월 이내)	10점
	▶ 우대점수(최대 10점) ※ 24개월을 초과하는 근무개월 수 × 0.833	10점
졸업성적	▶ 졸업평균평점 × 50/4.3 ※ 학점(4.3만점)을 50점으로 환산 ※ 사법시험 연수원 졸업성적 또는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성적	50점
역량평가	▶ 자기소개서	15점
	▶ 업무수행계획서	15점

[붙임 5-2] 공인회계사 서류전형 채점기준

전형요소	채점기준	배점
직무경력	▶ 기본점수(실무수습기간)	15점
	▶ 우대점수(최대 15점) ※ 24개월을 초과하는 근무개월 수 × 0.417	15점
역량평가	▶ 자기소개서	35점
	▶ 업무수행계획서	35점

[붙임 5-3] 정보조사연구 서류전형 채점기준

전형요소	채점기준	배점
직무경력	▶ 기본점수(경력 36개월 이내)	15점
	▶ 우대점수(최대 20점) ※ 36개월을 초과하는 근무개월 수 × 1	20점
	▶ 관련 학과 학위 소지자(학사 1점, 석사 3점, 박사 5점) ※ 관련 학과(전공복수전공) : 통계학·언론정보학·전산·수학·컴퓨터공학 ※ 학위가 복수일 경우 점수 가산되나, 최대 5점만 인정	5점
역량평가	▶ 자기소개서	30점
	▶ 업무수행계획서	30점

[붙임 6]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 자	100m 달리기 (초)	13.0 이내	13.1 ~ 13.5	13.6 ~ 14.0	14.1 ~ 14.5	14.6 ~ 15.0	15.1 ~ 15.5	15.6 ~ 16.0	16.1 ~ 16.5	16.6 ~ 16.9	17.0 이후
	1,000m 달리기 (초)	230 이내	231 ~ 236	237 ~ 242	243 ~ 248	249 ~ 254	255 ~ 260	261 ~ 266	267 ~ 272	273 ~ 279	28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 ~ 55	54 ~ 51	50 ~ 46	45 ~ 40	39 ~ 36	35 ~ 31	30 ~ 25	24 ~ 22	21 이하
	좌우 악력 (kg)	61 이상	60 ~ 59	58 ~ 56	55 ~ 54	53 ~ 51	50 ~ 48	47 ~ 45	44 ~ 42	41 ~ 38	37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8 이상	57 ~ 52	51 ~ 46	45 ~ 40	39 ~ 34	33 ~ 28	27 ~ 23	22 ~ 18	17 ~ 13	12 이하
여 자	100m 달리기 (초)	15.5 이내	15.6 ~ 16.3	16.4 ~ 17.1	17.2 ~ 17.9	18.0 ~ 18.7	18.8 ~ 19.4	19.5 ~ 20.1	20.2 ~ 20.8	20.9 ~ 21.5	21.6 이후
	1,000m 달리기 (초)	290 이내	291 ~ 297	298 ~ 304	305 ~ 311	312 ~ 318	319 ~ 325	326 ~ 332	333 ~ 339	340 ~ 347	348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 ~ 50	49 ~ 45	44 ~ 40	39 ~ 35	34 ~ 30	29 ~ 25	24 ~ 19	18 ~ 13	12 이하
	좌우악력 (kg)	40 이상	39 ~ 38	37 ~ 36	35 ~ 34	33 ~ 31	30 ~ 29	28 ~ 27	26 ~ 25	24 ~ 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0 이상	49 ~ 45	44 ~ 40	39 ~ 35	34 ~ 30	29 ~ 26	25 ~ 21	20 ~ 16	15 ~ 11	10 이하

※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붙임 8]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

분 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5점	4점	2점	
학 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1급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전자·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전자·전자계산기산업기사	
국 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국어	영 어	-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 (New TEPS 488 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 -G-TELP Level 2 89 이상	-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 (New TEPS 399 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G-TELP Level 2 75 이상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New TEPS 268 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 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G-TELP Level 2 48 이상
	일 어	-JLPT 1급(N1) -JPT 850 이상	-JLPT 2급(N2) -JPT 650 이상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중국어	-HSK 9급이상(新 HSK 6급)	-HSK 8급 (新 HSK 5급-210점 이상)	-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노동	-공인노무사			
무도		-무도4단 이상	-무도2·3단	
부동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교육	-청소년상담사1급	-정교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지도사 2·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재난·안전관리	-건설안전·전기안전·소방·가스기술사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가스·원자력기사 -위험물기능장 -해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산업안전·건설안전·소방설비·가스·위험물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해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화약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분 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5점	4점	2점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 통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산업기사
토 목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법 무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급
의 료	-의사 -상담심리사1급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임상심리사2급 -작업치료사
특 허	-변리사		
건 축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건축품질시 험기술사	-건축, 건축설비기사	-건축·건축설비·건축일 반시공산업기사
전 기	-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 기술사	-전기·전기공사기사	-전기·전기기기·전기공 사산업기사
식품위생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환 경	-폐기물처리기술사 -화공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화공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비 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2.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3.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함.
4.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신체·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함.

※ '12. 1. 1. 이후,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워드프로세스 1급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붙임 9]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6)**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5)**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분야	시도	응시 번호	생년월일 <small>(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small>
0 0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0 0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0 0 0 0 1 1 1 1 2 2 2 2 3 3 3 3 4 4 4 4 5 5 5 5 6 6 6 6 7 7 7 7 8 8 8 8 9 9 9 9	0 0 0 0 1 1 1 1 2 2 2 2 3 3 3 3 4 4 4 4 5 5 5 5 6 6 6 6 7 7 7 7 8 8 8 8 9 9 9 9

한글성명	
필적 감정용 기재란	(배치) 위 응시지와 동일함.

검 인	
검 인	검 인

(제 1 과목)	문번	1	2	3	4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13	1	2	3	4	
14	1	2	3	4	
15	1	2	3	4	
16	1	2	3	4	
17	1	2	3	4	
18	1	2	3	4	
19	1	2	3	4	
20	1	2	3	4	

(제 2 과목)	문번	1	2	3	4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13	1	2	3	4	
14	1	2	3	4	
15	1	2	3	4	
16	1	2	3	4	
17	1	2	3	4	
18	1	2	3	4	
19	1	2	3	4	
20	1	2	3	4	

(제 3 과목)	문번	1	2	3	4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13	1	2	3	4	
14	1	2	3	4	
15	1	2	3	4	
16	1	2	3	4	
17	1	2	3	4	
18	1	2	3	4	
19	1	2	3	4	
20	1	2	3	4	

(제 4 과목)	문번	1	2	3	4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13	1	2	3	4	
14	1	2	3	4	
15	1	2	3	4	
16	1	2	3	4	
17	1	2	3	4	
18	1	2	3	4	
19	1	2	3	4	
20	1	2	3	4	

(제 5 과목)	문번	1	2	3	4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13	1	2	3	4	
14	1	2	3	4	
15	1	2	3	4	
16	1	2	3	4	
17	1	2	3	4	
18	1	2	3	4	
19	1	2	3	4	
20	1	2	3	4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